

의사 집단행동 관련 인증조사 방안

<2024.06.12.(수), 의료기관평가인증원>

□ 필요성

- '24.2월 이후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조치사항 마련 필요
- 비상진료 체계 운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, 의료기관이 인증조사 준비 시 혼란이 없도록 조치사항을 명확히 안내 필요

□ 조치방안

- (종합병원)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
- (수련병원)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시 대상 기간 조정
- (상급종합병원)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
- (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력 의료기관)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 현장조사로 갈음

□ 조치방안 세부내용

-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
 - (대상)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종합병원
 - ※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업무 범위 설정 후 별도 복지부 제출 및 승인 완료된 의료기관만 해당
 - (내용)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업무별 수행자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인정

-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조치로, 의료기관 내 규정 변경 없이 시행하더라도 인정
- 단, 업무 변경 관련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, 간호사 배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조사 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함
- * (관련 인증기준 예시) 기준 1.3 수술·시술의 정확한 수행, 3.2.2 심폐소생술 관리, 5.3 시술 계획, 시술 중 환자안전보장, 6.5 동의서, 12.1 의료정보/의무기록관리, 12.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등

○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시 대상 기간 조정

- (대상)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으로 '24년 인증조사 예정인 의료기관
- (내용)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대상기간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, 확인 시점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

구분	기존	조정(안)
본조사	조사 전월말 기준 6개월	- 기존 동일 또는 -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6개월('23.9월 ~'24.2월) 중 선택
중간현장조사	조사 전월말 기준 1개월	- 기존 동일 또는 -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1개월('24.2월) 중 선택

○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

- (대상) 제5기('24~'26)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 의료기관
- (내용)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, 인증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사하되, 상향된 종별에 맞는 인증기준으로 재인증 받도록 기존에 1년간 취소 유예한 것을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
 - 의료기관의 운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기간 반영하여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되,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체 조사 후 유효기간을 부여하기 위함
- (유의사항)
 - 인증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「인증

비용 관리 지침」에 따름

- 추가 유예된 6개월('25.1.1. ~ 6.30.) 중 조사 시행하는 경우 퇴원 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대상기간은 조정하지 않음(조사 전월말 기준 6개월 유지)

○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현장조사로 같음

- (대상) '24년 1년차 중간자체조사 제출대상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
- (내용) 아래 요건으로 수시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중간현장조사로 수시조사 같음
 - (서비스영역 변화) 인증 받은 연도 대비, 연인원 입원환자 수 또는 일평균 수술 건수에 1/3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
 - (물리적 구조 변화) 인증 받은 연도, 허가 병상 수에 1/3이상 변화가 있는 경우
- *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정기조사(본조사, 중간현장조사)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조사를 같음하고 있으나, 국가 위기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변화였음을 고려

□ 기타사항

○ '24년 중간현장조사 일정 조정

- 「비상진료지원방안」(보건복지부, 2024.02.20.)에 근거하여 수련병원이 중간현장조사 시행 3일 전 일정 통보를 받았으나,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해당 일정에 조사 수검이 어려운 경우, 1회에 한하여 조사 유예 신청 허용
- * 개별 의료기관에 송부하는 중간현장조사 일정 안내 공문 참고하여 신청하며, 일정은 중간현장조사 기간(24±3개월) 내로 재수립하여 3일 전 통보 후 조사 시행

□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

- ▶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[대법원 2005도 5579]
- ▶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[대법원 2012도16119]
- ▶ 사망 진단[대법원 2017도10007 판결]
- ▶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·관여하지 아니한 경우[대법원 2010도5964 판결]
- ▶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[대법원 2008도590 판결]

□ 추가 업무 수행 기준

- 검사, 진단, 치료,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(의사결정) 그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하건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

*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·교부를 지시한 이상,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·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[대법원 2019두50014 판결]

- 심전도, 초음파 등 행위*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

* 심전도, 초음파, 고주파 온열치료, 체외 충격파 쇄석술,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, 혈액 검체채취, 혈액 배양검사(Blood culture) 등

- 하이픈 표시(-) : 의료기관 내 ‘(가칭)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’에서 간호사 자격, 교육,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(일반간호사의 경우 충분한 교육·훈련 선행 필요)
- X :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
- * (가칭)전담간호사 : 특정 분야, 특정 업무(예: 기술)를 훈련받은 간호사

진료지원행위		전문 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
Scope of practice	Practice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
1	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	• 문진, 예진,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	-	-	-
		•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	-	-	-
2	검사1	검체 채취	• C-line & PICC 혈액채취	-	-
			• nasal swap culture	-	-
			• suction tip culture	-	-
			•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	-	X
			• 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	-	X
			• A-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	-	-
			• 조직 채취	-	X
			• 뇌척수액	-	X
		천자	• 검체 나누기	-	-
			• 골수천자 • 복수천자	- -	X X
3	검사2	• 요역동학검사	-	-	
		• wound swab, culture	-	-	
		• MMSE & CDR	-	X	
		• 사혈(phlebotomy) 성분 채집술(apheresis)	-	X	
		• 직장 검체 채취(rectal swab)	-	-	
		• 전립선 마사지(G3)	-	X	
		• 직장 수지 검사(DRE)	-	X	
		• COVID-19 검사	-	-	
		• TTA(Trans Tracheal Aspiration) *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	-	X	
		• ABGA 기계 사용 (중환자실, 회복실)	-	-	
4	치료 및 처치1	• 석고 붕대(cast, 통깁스)	-	X	
		• 부목(splint, 반깁스)	-	X	
		• 단순 드레싱(일반, 시술 상처, 단순 욕창 등)	-	-	
		• 복합 드레싱(catheter, tube, 수술 부위 드레싱 등)	-	X	
		• 봉합(stapler 이용한 봉합)	-	X	
		• 발사(stitch out) 여부 결정	-	X	
		• 발사 자체	-	X	
		• 배액관 관리/장루관리	-	X	
		• 배액관 관리 및 제거 (흉강 배액관, 복강 배액관, 창상 등)	-	X	
		• 누공 관리 및 제거 (위루관 또는 장루관, 방광루관 등)	-	X	

진료지원행위		전문 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
Scope of practice	Practice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
5	치료 및 처치2	• 관절강 내 주사	X	X	X
		• C-line 조영제 투여	-	-	X
		• 방광조루술, 요로 전환술(cystostomy)	X	X	X
		• 유치 도뇨관(foley catheter)	-	-	-
		• 방광암 BCG 주입	-	-	X
		• 각종 카테터 제거(CVC, PICC)	-	-	X
		• C-line/PICC/PCD/PTBD insertion)시 환자 보조 및 keep	-	-	-
		• C-line 제거	-	-	X
		• PICC 삽입	-	-	X
		• 중심정맥관 삽입	-	X	X
		• 중심정맥관 관리(repair, removal 등)	-	X	X
		• 중심정맥관 관리 (occlusion 해결, 혈액채취)	-	-	-
		• 호흡치료(respiratory therapy,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)	-	-	X
		• Chemoport needling	-	-	-
		• Tracheostomy tube 드레싱	-	-	X
		• T-tube 발관 및 교체	-	-	X
		• 감염 욕창드레싱, 흡인드레싱(curavac)	-	-	X
		•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-pad 제거	-	-	-
		• 배액관(J-p, Hemo-vac) 삽입	X	X	X
		• Retension enema	-	-	X
• S/O, I&D 등 침습적 처치	-	-	X		
• Tube irrigation	-	-	X		
6	수술	• 대리 수술(집도)	X	X	X
		• 수술 부위 봉합(suture) 또는 봉합 매듭(tie)	-	-	X
		•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(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, GIA를 이용한 절단 등)	-	-	X
		• 수술 보조 (scrub 아닌 1st/2nd assist)	-	-	X
		• 골절 내고정물(screw, k-wire) 삽입 및 제거	X	X	X
7	마취	•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	-	X	X
		• 삽관/발관	-	X	X
		• 처방된 마취제 투여	-	-	-
		• 사전의사결정서(DNR) 작성	X	X	X

진료지원행위		전문 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	
Scope of practice	Practice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	
8	중환자 관리	• 기관 삽관	-	X	X	
		• 기관 발관	-	X	X	
		• 응급상황 심폐소생술	-	-	-	
		• 응급약물 투여	-	-	-	
		• L-tube 삽관	-	-	X	
		• L-tube 발관	-	-	-	
9	처방 및 기록	• 전문의약품 처방	X	X	X	
		• 위임된 검사·약물 처방, 프로토콜 하 검사·약물 처방	-	-	X	전문간호사, (가칭)전담간 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(Co-Sign)
		•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	-	-	X	
		•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	-	-	X	
		• 협진 의뢰 초안 작성	-	-	X	
		• 진단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	-	-	X	
		• 수술기록/마취기록 초안 작성	-	-	X	
• 수술 수가 입력	-	-	-			
10	환자 평가/교육	• 치료 부작용 보고	-	-	-	
		• 치료 부작용 평가	-	-	X	
		• 검사 결과 추이 확인	-	-	-	
		• 특수장치 모니터링 (심전도)	-	-	-	
		• 특수장치 모니터링 (ECMO 등)	-	-	-	
		• 환자, 보호자 교육 및 상담	-	-	-	
		• 환자 자조모임 운영	-	-	-	
		•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	-	-	X	

<설명회(3.8) 질의사항 추가 안내>

연 번	질의사항	전문 간호사	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		비고
			(가칭) 전담간호사	일반간호사	
1	수술 중 견인(수술부위 들어올리기, 별 리기 등), 실 자르기(suture cutting)	-	-	X	
2	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'수술부위 표시'	-	-	X	
3	항암제 정맥주사 투여	-	-	-	